

#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1월 18일 서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8일 회부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99. 12.23)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사회진흥과장 문 승 빈)

### 가. 제안이유

- 구민의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으로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지방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합창단 구성(제2조) : 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 단원의 자격(제5조) :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단원의 위촉(제7조) :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장 재 영)

이 제정조례안은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진흥으로, 구민정서의 함양, 우리 구의 위상제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지방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합창단 구성(제2조),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단원의 자격(제5조)과 단원의 위촉·해촉, 실비보상(제10조)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 제3항에서는 합창단 단장만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합창단에 대한 실무를 맡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휘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둘째, 실비보상에 관련하여 제10조 제2항에서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셋째,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매년 2천 여 만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 서구의 재정형편이나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년 11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 1. 제안이유

구민의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으로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지방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합창단 구성(제2조) : 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 나.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 다. 단원의 자격(제5조) :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라. 단원의 위촉(제7조) :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3. 참고사항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나.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단원은 지휘계통에 따른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합창단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단체 및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서기는 실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단원의 자격)** ①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운영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전형방법)**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특별 전형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할 수 있다.  
③기간 만료 전 단원 결원 시 운영위원회의 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은 전임 단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음악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자
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 자
3. 출연 또는 배역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4. 단원으로서 성향과 의욕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
5.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제9조(예산) 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 예산으로 계상한다.

제10조(실비보상) ①합창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육성경비 및 실비보상금을 계상 지급할 수 있다.

②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②(경과조치)본 조례 시행전 기전형에 의거 최초 선발된 단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 전형을 받은 것으로 본다.